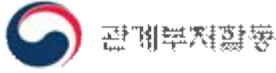


QR코드를 이용 시, 음성으로 보도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5. 4. 28.(월) 09:00 배포: 2025. 4. 25.(금) 17:00

안마도, '사슴과의 40년 전쟁' 끝!... “생태계 파괴·농작물 피해 외래 꽃사슴, '유해야생동물' 지정된다”

- 국민권익위, 지난해 1월 '안마도 꽃사슴' 등 무단 유기 가축 처리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환경부·농식품부, 관련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 실시
- 환경부, 서식 과밀로 피해 유발하는 '꽃사슴' 유해야생동물 지정 추진
- 농식품부, 가축 유기자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하는 「축산법」 개정 진행

□ 앞으로, 서식 밀도가 너무 높아 농림수산업 등에 피해를 주거나 주민 생활에 피해를 주는 꽃사슴이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될 전망이다. 또한 가축을 유기한 사람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 이는 지난 2024년 1월, 국민권익위가 무단 유기 가축 처리에 대한 제도개선을 권고한 이후,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에서 적극적인 후속 조치를 이행한 결과다.

<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권고(무단 유기 가축 처리방안) 주요 내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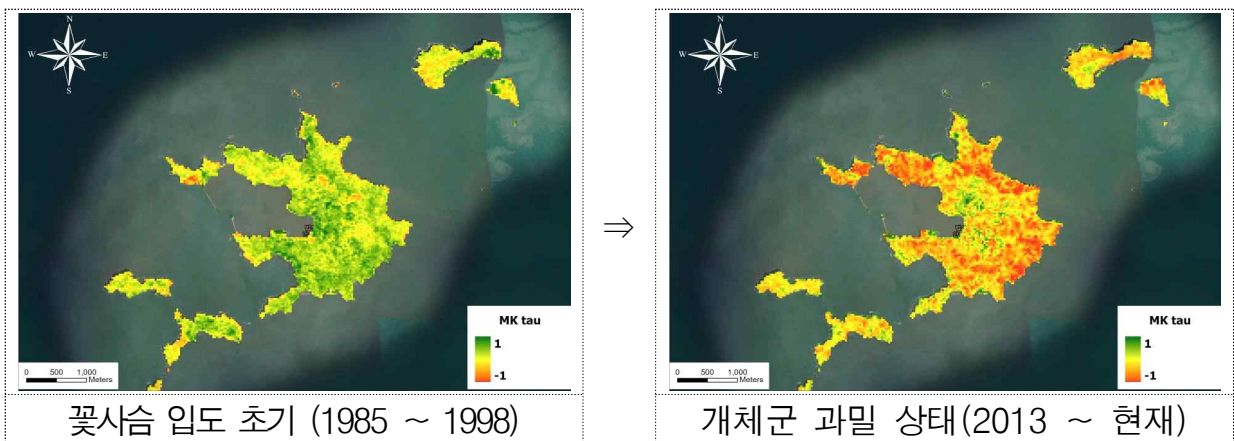
소관 부처	권고 사항
환경부	① 안마도 사슴으로 인한 주민 피해 및 생태계 교란 실태 조사 ② 조사 결과에 따라 법정관리대상 동물 지정 여부 결정 등 후속조치
농식품부	① 가축사육업 등록취소 또는 폐업 시 가축 처분 의무화 규정 ② 가축 유기한 자에 대한 처벌 조항 신설

□ 꽃사슴은 1950년대 이후 가축 사육 등 경제적인 활용 목적과 전시 목적으로 대만과 일본에서 수입된 외래종이다. 안마도*의 경우와 같이, 수입된 꽃사슴 중 일부가 주인으로부터 버려져 야생에서 번식하게 되었지만, 이를 규율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개체 수 조절에 한계가 있었다.

* 전라남도 영광군의 안마도에는 원래 꽃사슴이 서식하지 않았으나, 축산업자가 가축으로 사육하던 꽃사슴 10여 마리를 1980년대 중후반 안마도에 유기한 이후, 빠르게 개체 수가 증가하여 생태계 교란 및 농작물 피해 등 문제가 발생함

환경부의 꽃사슴 생태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안마도에는 937마리, 굴업도에는 178마리가 서식하고 있으며, 이는 고라니의 전국 평균 서식 밀도(7.1마리/km²)에 비해 안마도는 약 23배(162마리/km²), 굴업도는 약 15배(73마리/km²)에 해당한다.

〈 안마도 식생지수 변화(초지 및 숲지역 → 불모지) 〉



※ 식생지수는 식물의 성장 상태를 수치로 나타낸 지표로 0.2 이하는 암석·불모지, 0.2~0.5는 초지, 0.5 이상은 울창한 숲 지역으로 구분되며, 값이 낮을수록 식생 파괴가 심각함을 의미한다.

□ 꽃사슴은 번식력이 강하고 천적이 없어 빠르게 개체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초본류·열매·나무껍질 등을 무분별하게 섭식해 자생 식물 고사 및 식생 파괴를 유발하고 있다.

그리고 고라니, 산양, 노루 등 토종 야생동물과의 먹이·서식지 경쟁으로 인해 고유 생태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안마도의 경우, 식물 생태계 파괴는 물론 최근 5년간 약 1억 6천 여만 원 규모의 농작물 피해도 확인됐다.

- 이에 더하여, 꽃사슴은 사람에게 질병을 전파할 수 있는 진드기의 주요 숙주로 판명되었다. 환경부가 안마도, 난지도, 굴업도 등에서 채집한 진드기 시료 25점 중 22점에서 사람에게 감염 우려가 있는 리케차(Rickettsia) 병원체가 확인됐다.

리케차 병원체에 감염될 경우 고열, 두통, 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치료가 늦어질 경우 폐렴 등으로 악화돼 사망에 이를 가능성도 있다.

- 이에 따라 환경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는 내용을 연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유해야생동물’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의미한다.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으면 지자체에 포획 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조사 결과 포획 외에 다른 수단이 없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포획이 허용된다.

- 그리고 안마도 꽃사슴과 같이 가축이 유기되어 생기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법 개정 등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가축사육업자가 가축을 유기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축산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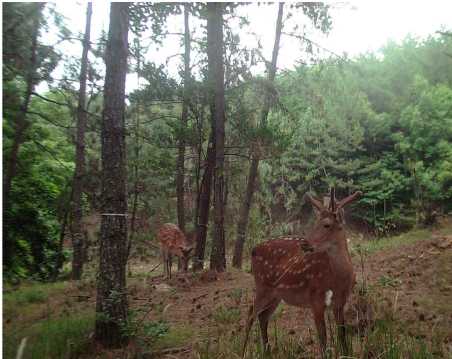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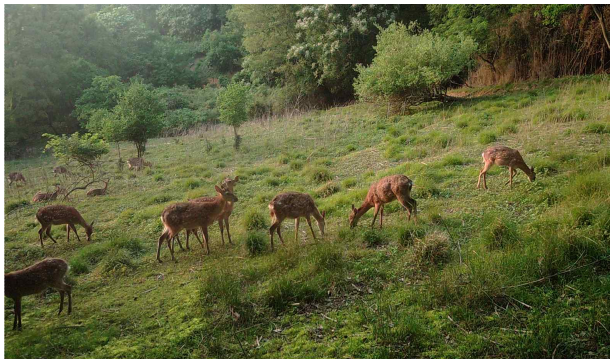
□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그동안 명확한 규정 부재로 방치돼 온 문제들이 국민권익위의 조정과 두 부처의 협력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하여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중재함으로써 국민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국민권익위원회 집단고충조사팀	책임자	팀 장	김낙렬	(044-200-7419)
		담당자	사무관	서상원	(044-200-7397)
담당 부서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책임자	과 장	김경석	(044-201-7245)
		담당자	사무관	고동훈	(044-201-7248)
담당 부서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책임자	과 장	이연섭	(044-201-2331)
		담당자	서기관	이동민	(044-201-2338)



참고1

꽃사슴 생태특성

항목	주요 내용
<p>생물 특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명 : <i>Cervus nippon</i> spp ○ 영명 : Sika deer ○ 원산지 : 대만, 일본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p>국내 유입 및 확산경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유입경로는 1950년 이후 경제적 목적 및 전시목적으로 일본과 대만에서 수입되었으며 탈출개체들이 철원, 태안, 대전, 순천, 부산, 제주, 백령도 외 기타 도서지역으로 유입되면서 자연생태계 서식이 확인되고 있음 ○ 2018년 전라남도 영광군 안마도에서 최대 1,000마리가 서식하는 것이 확인된 이후 굴업도, 난지도, 소록도 등 집단서식지가 잇따라 확인됨
<p>국외 분포 및 위해종 지정 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꽃사슴은 오스트리아, 체코, 덴마크, 프랑스, 독일, 헝가리, 아일랜드, 폴란드, 러시아, 스위스, 우크라이나, 영국, 캐나다, 미국, 뉴질랜드 등 전세계적으로 침입되어 있는 외래생물임 ○ 일본은 야생동물보호법에 의거하여 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
<p>생태 특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꽃사슴 수컷 성체의 행동권은 약 3km²로 4~9마리 정도의 개체군을 구성함 ○ 번식기는 주로 9월~10월로 다음해인 5~6월에 보통 1마리의 새끼를 출산 ○ 초본식물, 나뭇잎, 나무껍질 등을 섭식하며 해발고도 1,800m까지 다양한 고도에서 서식 가능
<p>위해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체수의 폭발적인 증가에 따른 생태적 피해(식생지역 초토화, 뽕질에 의한 수목피해 등) ○ 서식지 주변 농작물에 대한 경제적 피해 ○ 번식기 소음 및 민가출현에 따른 거주민 삶의 질 저하 ○ 동물 차길 사고에 의한 인명피해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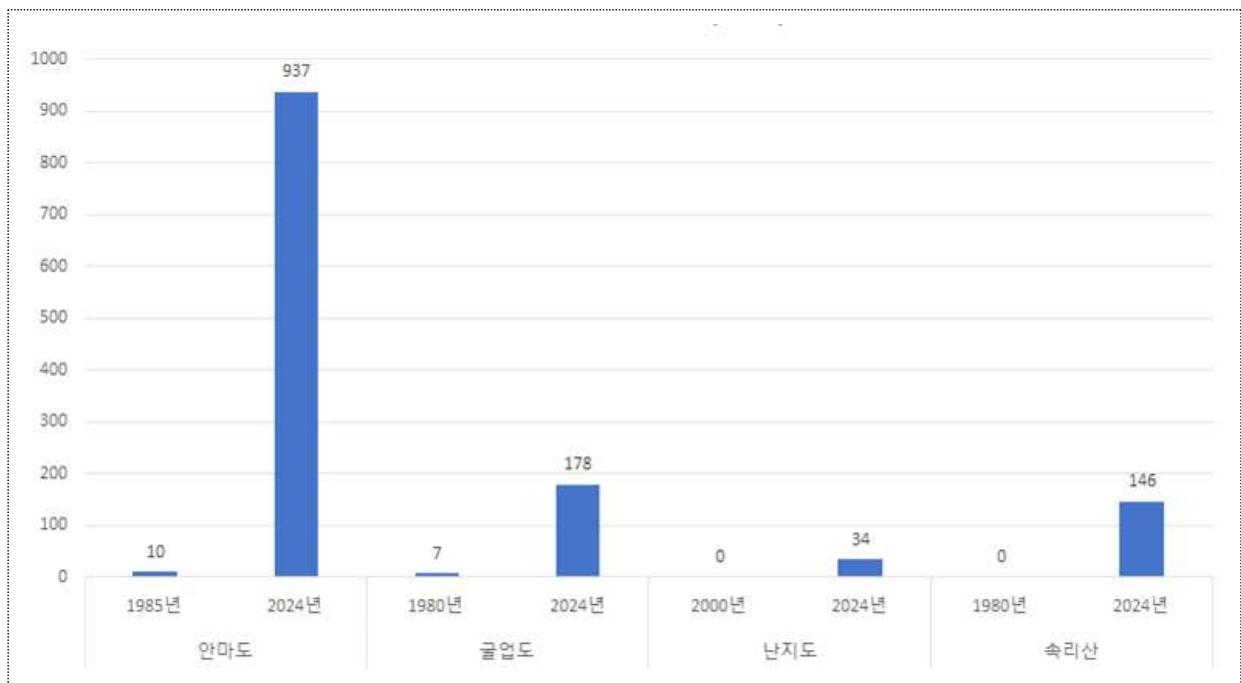
참고2

꽃사슴 개체수 변화(국립생태원, 2024년)

(조사지역) 안마도(영광), 굴업도(인천), 난지도(당진), 속리산국립공원

(단위 : 마리)

구 분	안마도	굴업도	난지도	속리산
도입 초기	10 ('85년)	7 ('80년)	- ('00년)	- ('80년)
현재 기준	937 ('24년)	178 ('24년)	34 ('24년)	146 ('24년)



참고3

유기된 꽃사슴으로 인한 피해 사례

구분	지자체	피해 사례	개체수	민원 (건수)	비고 (요청사항)
도서 지역	영광군 안마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슴으로 인한 재산, 농작물 피해 등 * (원인) '85년경 마을주민(3명)이 사슴 10여마리 방목 	약 937마리	100건 이상	유해 야생동물 지정 건의
	완도군 당사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슴으로 인한 재산, 농작물 피해 등 * (원인) 관광자원화 목적의 사슴 7여마리 방목 	약 600마리	100건 이상	"
	옹진군 굴업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슴으로 인한 재산, 농작물 피해 등 * (원인) '80년 주민이 사슴 수마리 방목 	약 178마리	10건 이상	"
	당진시 난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슴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등 * (원인) 주민의 사슴 방목으로 추정 	약 34마리	15건 이상	"
	창원시 우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슴으로 인한 재산, 농작물 피해 등 * (원인) 관광자원화 목적의 사슴 2여마리 방목 	약 30마리	100건 이상	"
	고흥군 소록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슴으로 인한 재산, 농작물 피해 등 * (원인) 한센인 위로차 '92년부터 4마리 방사 	약 230마리	언론	"
내륙 지역	제주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슴으로 인한 식생 훼손(한라산 내 자생식물 섭취 등) * (원인) 주민의 사슴 방목으로 추정 	약 250마리	70~ 100건	"
	순천시 봉화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슴 도시출몰로 안전사고 우려 * (원인) '10년 조례동 사슴농장에서 4마리 탈출 	약 70마리	언론	"
	태안군 안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슴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등 * (원인) 40여년전 국방과학연구소 안흥 시험센터에서 번식한 사슴 탈출 	약 30마리	지자체 건의	"
	국립 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슴으로 인한 생태계 교란 등 * 속리산 146, 경주 3, 계룡산 4, 지리산 30, 다도해 103 	약 286마리	자체 조사	"

□ 목 적

-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여 인명·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포획 등의 구제방안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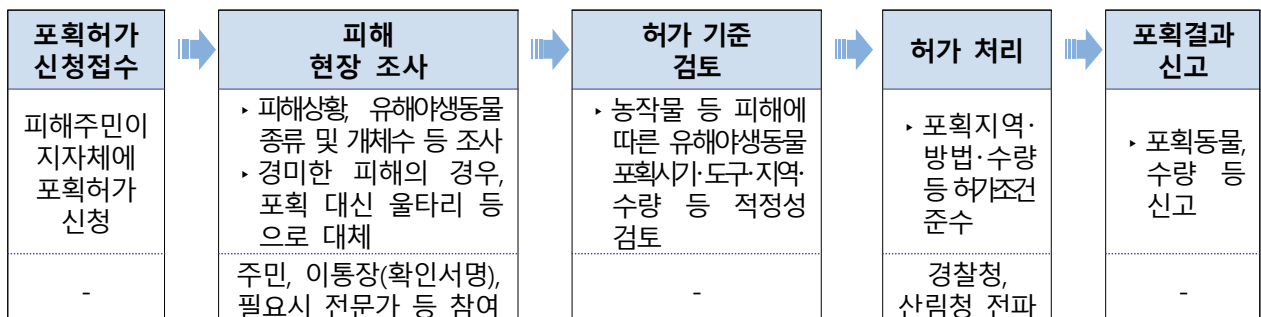
□ 추진 경과

- (’84.7, 산림청)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에서 유해조수 최초 정의 및 고시(산림청 고시제5호, 11종)
 - * 농작물·과수에 피해를 주는 까마귀류(큰부리까마귀 제외) 등
- (’94.6, 산림청) 유해조수 고시(산림청 고시 제1994-9호, 13종)
- (’00.9, 환경부)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에서 유해조수를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토록 개정(환경부고시 제2000-116호, 13종)
 - * 전주 등 전력시설에 피해를 주는 까치(항목) 추가
- (’05.2, 환경부) 「야생동·식물보호법 및 시행규칙」 제정을 통한 유해야생동물 규정(별표3, 15종)
 - * 어치, 직박구리, 갈까마귀, 떼까마귀(4종) 추가 및 분묘를 훼손하는 멧돼지(항목) 추가, 다람쥐 및 들고양이(2종) 삭제
- (~23.12, 환경부)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별표3 유해야생동물 18종
 - * 집비둘기, 큰부리까마귀, 민물가마우지(3종) 추가

□ 포획 허가

- 재산상 피해를 입은 자가 기초 지자체의 장에게 유해야생동물 포획 허가 신청서(가해동물명, 피해대상, 피해정도, 피해금액 등 기재) 제출
 - 지자체장이 피해 상황, 유해야생동물 개체수 등을 조사 후 유해야생동물 포획 외에 다른 피해 방지방법이 없거나 실행이 곤란할 경우 허가증 발급 ※ 대리포획, 수확기피해방지단은 수렵면허 보유

<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절차 >



□ 현재 유해야생동물 지정 현황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5. 1. 24.>

유해야생동물

1. 장기간에 걸쳐 무리를 지어 농작물 또는 과수에 피해를 주는 참새, 까치, 어치, 직박구리,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 큰부리카마귀
2. 일부 지역에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농·림·수산업에 피해를 주는 꿩, 멧비둘기, 고라니, 멧돼지, 청설모, 두더지, 쥐류 및 오리류(오리류 중 원앙이, 원앙사촌, 황오리, 알락쇠오리, 호사비오리, 빨쇠오리, 붉은가슴 흰죽지는 제외한다)
3. 비행장 주변에 출현하여 항공기 또는 특수건조물에 피해를 주거나, 군 작전에 지장을 주는 조수류(멸종위기 야생동물은 제외한다)
4. 인가 주변에 출현하여 인명·가축에 위해를 주거나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멧돼지 및 맹수류(멸종위기 야생동물은 제외한다)
5. 분묘를 훼손하는 멧돼지
6. 전주 등 전력시설에 피해를 주는 까치,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 큰부리카마귀
7. 일부 지역에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분변(糞便) 및 털 날림 등으로 국가 유산 훼손이나 건물 부식 등의 재산상 피해를 주거나 생활에 피해를 주는 집비둘기
8. 일부 지역에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양식업,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낙시터업,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내수면어업 등의 사업 또는 영업에 피해를 주는 민물가마우지